

광주직할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직할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및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이행등 조치명령 불이행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의견진술)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5조(과태료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광주직할시서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직할시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부과업무취급) 과태료부과·징수는 법 제15조 제5항에 규정된 사업자등의 지도·단속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5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